

#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통일연구원)

## ◆ 논문 요약 ◆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 규범에 입각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국가이므로 주권의 원칙과 인권의 보편성간에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실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지니고 있는 국제정치적 속성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대응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인권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라는 점에서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문제삼는 것에 대하여 체제에 위협적인 정치적 속성으로 인식하여 '주권의 원칙'을 내세

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을 통한 내정간섭 기도에 대하여 냉전 종식 이후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 본성을 숨기고 지배와 약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적 침탈수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침탈을 위하여 인도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과 인도주의를 외피로 한 체제위협의 핵심세력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있고 미국이 미국식 인권기준에 입각하여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인권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 서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질서의 질적인 변화로 다양한 행위자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인권규범에 입각하여 인권을 보호

하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여전히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인권규범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권실행의 주체인 국가의 체제와 태도에 따라 심각한 인권유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권의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엔헌장에서 주권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내정간섭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국가의 체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인권은 참여한 국제정치적 속성을 가진 문제로 인식되고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실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경제난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또한 극히 열악한 상황이다. 북한 내에서의 인권유린은 근본적으로 '유일영도체제'라는 체제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체제의 안보와 직결된 국제정치적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은 주로 선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계에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업적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화적 상대주의 논쟁, 주권과 인권과의 상관관계 논쟁을 중심으로 현실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지니고 있는 국제정치적 속성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대응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서방식 인권을 강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식 인권기준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북한이 해결책으로 제기하고 있는 유엔인권위의 민주화와 공정성 회복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제국주의 침탈수단으로서 인권인식, 세계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북한이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선전적인 차원의 입장과는 달리 국제사회에 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우리식' 인권기준과 국제정치 이슈로서의 인권

### 1. 문화적 상대주의와 '우리식' 인권기준에 입각한 대응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면서 “인권은 한 나라의 범위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장되고 옹호되어야 할 인류공동의 신성한 권리이다. 개별나라들에서의 인권유린행위는 전반적인류의 번영과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된다.”<sup>1)</sup>고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신성한 권리라는 점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인권을 ‘정치적 속성’을 지닌 사안으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북한의 판단은 냉전질서의 와해라는 세계질서관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력균형이 파괴됨으로써

1) 안명혁, “미제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 『근로자』, 1990년 8호, (평양: 근로자사, 1990)

2)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인 국제인권규약 A, B규약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서방진영과 사회주의진영간에 입장차이가 노정되어 조정을 거쳐 성안되었는 바, 현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A, B규약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치적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Dominic McGoldr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Oxford: Clarendon Press, 1994), Chapter 1 참조.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인권이 국제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3)</sup> 냉전종식이라는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권이 국제회의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를 점하고 있으며 ‘인권 옹호’가 ‘열병처럼’ 퍼지고 있는데, 인권문제가 논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간 관계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이에 따라 오늘날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제정치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5)</sup>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촉발된 탈냉전적 세계질서의 재편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인권이 북한의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상대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대응논리를 찾고 있다.<sup>6)</sup>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지만 각국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는 각국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라는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라는 기준에서 볼 때 ‘우리식’의 인권기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라는 용어는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다.<sup>7)</sup> 김일성이 워싱턴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3) 『로동신문』, 2000.1.12.

4)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5) 『로동신문』, 2000.4.3.

6) 현실 국제정치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John J. Tilley, “Cultural Relativism,” *Human Rights Quarterly*, Vol. 22, No. 2, May 2000.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적 가치’라는 논리 하에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인식이 1993년 방콕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다. <http://www.unhchr.ch/html/menu5/wcbangk.htm>

7)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 477; 조성곤, “인권의 본질,” 『철학연구』, pp. 34~35.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sup>8)</sup>고 강조하면서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되는것”<sup>9)</sup>이 ‘우리식 인권’의 절대기준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인권기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인권기준’이라는 관점에서는 ‘보편성’을 부인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우리식 인권개념에 따라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면서 인민들이 좋아하여 지지하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생활을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에 맞는 우리식 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특정한 나라가 자기의 일방적인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내려 먹이려 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고 선린관계의 파괴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논리이다. 또한 인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권문제를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북한의 기본태도이다. 즉, “우리는 인권문제에서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으며 더욱이 남의 눈치 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2)</sup> 여기서 북한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권기준은 ‘서방식’ 인권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인권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각 나라는 자기 인민의 기호와 요구, 실정에 맞게 인권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4)</sup>

8) 김일성,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제44권, 1996, p. 371.

9) 『로동신문』, 2001.3.2.

10) 『로동신문』, 2001.3.16. 자본주의진영의 인권의 보편성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박논리는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를 참조할 것.

11) 『조선중앙통신』, 2000.3.1.

12) 『로동신문』, 2001.3.2.

13)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14) 『로동신문』, 2001.3.16.

이상에서 보듯이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인권론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식 인권기준 하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조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내정간섭 비난

인권을 실행하는 기본적인 주체가 여전히 국가라는 현실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유린국이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기본논리가 주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우리식 인권기준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의 하나로 '주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할 때 '자결권'이 핵심요소로 작동하게 되는데, 각자의 실정에 맞는 사회제도 선택의 자결권을 통하여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기의 감정과 요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제재나 압력과 같은 강제적인 행위를 동원하여 인민들에게 특정 사회제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16)</sup>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신성한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문제는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고 자결권을 내세우고 있다.<sup>17)</sup>

15) 냉전종식 후 '평화의 위협'을 확대 해석하려는 유엔의 움직임, 개인주권 개념의 등장 등 인권과 주권의 원칙간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과 주권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pp. 54~59를 참조할 것.

16) 『로동신문』, 2000.3.12.

17)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 477.

이와 같이 정치, 사회제도의 자결권을 행사하여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여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가치',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도적'인 논리, 흑백이 전도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인권이 국경과 주권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은 사실은 내정간섭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국가를 생활영역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떤 권리와 자유가 향유되고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통하여 규정되고 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따라서 인권은 국권이며 국권은 곧 자주권으로서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9)</sup> 이와 같이 국권과 주권이 우선이고 주권이 수호될 때만 인권도 보장된다고 하여 북한의 인식들 속에는 인권이 '주권의 원칙'에 종속변수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편성을 앞세운 인권의 초국가논리와 주권의 원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2000년 3월 29일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대표가 한 연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일부 세력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권존중의 원칙을 재정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보호'라는 간판 아래 무력에 의해 약소 독립국가를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제지되지 않는다면 세계는 대규모, 소규모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무정부상태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갈등의 한 요인으로 인권의 초국가성

18) 『로동신문』, 2000.1.12.

19)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로동신문』, 2000.4.2. 주권이라는 국제정치적 속성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Chris Brown, “Human Rights,”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을 참조.

논리를 들고 있다. 또한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인민은 국가의 관할 영토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법적·실제적 조치에 의해 보장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권존중의 원칙이 재정의되거나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재강화되고 공고해져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sup>20)</sup>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도 인권분야에 대해 주권의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권의 원칙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권보호라는 간판 아래 약소국을 복속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인권문제를 체제와 관련된 문제, 즉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 3. 제국주의 침탈수단으로서의 인권

북한이 인권문제를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권의 원칙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음해, 파괴라는 세계질서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즉, 제국주의 침탈의 수단으로 인권문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일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수단으로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수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입니다.”<sup>21)</sup>

20)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21)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2월 15일,” 『김일성저작집』, 제32권, 1986, p. 537.

특히 북한은 탈냉전적 세계질서가 전개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약탈과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력균형이 파괴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는데, 식민지시대와 같이 마음대로 침략과 약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마취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마취제가 '인권'과 '자유'라는 주장이다.<sup>22)</sup>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으로 이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침략과 약탈의 수법뿐인데, 그러한 변화된 수법의 하나가 '인권' 공세라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느니", "인권이 국권우에 놓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 내정간섭과 압력의 구실로 이용하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인권공세의 밑바탕에는 서방식 민주주의, 서방식 정치모델의 확산을 통한 서방화의 기도가 깔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서방식민주주의', '서방식정치모델'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반동적 정치체제가 '우월'하다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방화', '자본주의화'란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식민지적' 연속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신식민주의적 침탈 수단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종교의 자유화'라는 개념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신식민주의화하여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화'도 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화'는 자신들의

22) 『로동신문』, 2000.1.12.

23) 『로동신문』, 2000.4.12.

24) 『로동신문』, 2000.1.8.

지배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십자군원정'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서방의 봉건영주와 기사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해방하기 위한 '십자군원정'이라는 기만적인 종교구호 하에 동방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약탈을 감행하였듯이 종교의 '자유화'라는 간판을 단 미국의 '십자군원정'의 목적은 완고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정치체제에 서방식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종교의 '자유화'를 포함시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서방식으로 정치체제를 개편함으로써 반제, 반미적인 국가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25)</sup>

#### 4. '인권재판관'으로서의 미국식 인권 비판

북한이 인권을 국제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연례 인권보고서를 매개로 한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인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타국의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인권기준을 '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적 역할을 미국이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세계를 1극화하려 한다는 세계질서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26)</sup>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자신의 체제유지에 필수요건인데, 인권문제로 인해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역설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미국식 인권기준을 보편적 것으로 규정하여 타국으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현상에 대해 '인권재판관'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미국이 매년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을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외무성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인권재판관'의 가소로운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27)</sup>

25) 『로동신문』, 1998.3.14.

26) 『로동신문』, 1998.3.22, 10.27, 2001.4.9.

27) 『조선중앙통신』, 1998.2.9, 1999.3.1, 3.6, 2001.3.1; 『민주조선』, 2000.3.4; 『로동신

북한은 먼저 미국이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하여 인권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제도변경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제코도 못셋는 주제"에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고 이른바 '미국식 가치관'을 강요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계를 만들어보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인권재판관'의 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공화국' 적대책동에서 유래하는 '압력소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sup>28)</sup>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의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정치체제' 자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9)</sup> 미국식 인권기준의 일방적인 강요는 주권의 원칙에 어긋나고 체제를 왜해하려는 기도라는 기본 인식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재판관 역할을 하려는 미국에 대하여 미국이 어떤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훈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서명한 헬싱키 협정에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상호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내세우며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무력간섭을 일삼고 있는데, 미국의 이른바 '인권 옹호' 구호는 침략과 간섭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0)</sup>

그리고 인권유린국이라는 논리로 인권재판관 역할을 하려는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수많은 유랑결식자, 빈곤자, 실업자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살인, 강도, 테러를 비롯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유태인 배척운동과 인종차별, 정치적 폭력, 언론의 어용화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범죄와 사회악을 인권의

문》, 2000.3.5. 미국의 연례보고서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최의철, 『미국 정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인권백서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00)을 참조.

28) "클린톤의 공화국인권발언을 규탄," 『조선중앙통신』, 1998.12.26.

29) 『민주조선』, 2000.3.4.

30) 『로동신문』, 2001.3.19.

범주에 넣고 미국의 인권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방대한 폭압기구들이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일반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언론, 출판과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 선진적인 사회활동가에 대한 박해와 추방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미국 내 인권실태를 거론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인권유린국이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하여 '평가'하고 '훈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인권재판관 역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1994년 9월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는 "조약과 법규는 국내법적견지에서 헌법의 요구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헌법에 위반되는것이라면 그 어떤 조약의 조항이든지간에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것이다"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국제적 조약도 자신들의 요구에 거슬리는 것이면 지키지 않겠다는 소리로서 미국헌법을 국제조약의 상위에 놓고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문제를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32)</sup>

미국식 인권기준을 강요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는 미국에 대하여 인권재판관으로 비판하고 있는 북한은 종교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인식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통과된 국제종교자유화법안(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각국의 종교자유화에 관한 현황, 종교적 믿음과 실천, 종파에 대한 국가의 정책,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화를 실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등을 담은 「연례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sup>33)</sup> 1999년 외무성 대변인은 9월 9일 미 국무성이 이른바 「1999년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각국의 종교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에

31) 『조선중앙통신』, 1999.3.6, 3.9; 『민주조선』, 2000.3.9; 『로동신문』, 1995.6.24, 2000.5.20, 5.25, 2001.3.19.

32) 『로동신문』, 2000.4.2.

33) [http://www.state.gov/www/global/human\\_rights/irf/irf\\_rpt/irf\\_index.html](http://www.state.gov/www/global/human_rights/irf/irf_rpt/irf_index.html);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 연구- 대남, 대미,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동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종교자유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CIRF)가 작성하고 있다.

대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종교활동을 하면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년례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인권재판관」 행세로도 성이 차지 않아 이제는 「종교재판관」의 감투까지 쓰면서 세계유일초대국으로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과 종교활동을 제멋대로 비방하는 것은 국제법의 가장 초보적인 원칙에 배치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시도이며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부질없는 압력소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34)</sup>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이 ‘인권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에는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기본요건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일초대국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는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하여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서방식’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을 동일한 세력으로 간주하던 태도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네덜란드, 벨지움, 캐나다,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등 북한이 대외관계를 확대발전하고 관계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5)</sup>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의 방편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

34) 『조선중앙통신』, 1999.9.26, 2001.10.30. 2001년도에는 10월 26일 공식 발표되었는데, CIRF는 이에 앞서 5월과 8월에 잇따라 북한, 중국, 이란 등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로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은 대북강경노선을 견지하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관계개선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해서인지 금년도에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각종 매체의 논설, 조선불교도연맹 등 각종 종교단체의 담화 등을 통해 맹렬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1.10.30, 11.2; 『민주조선』, 2001.11.2; 『연합뉴스』, 2001.11.4, 11.7.

35) 『로동신문』, 2001.3.16.

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미국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왔는데,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인권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연합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인권대화'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는 4개의 조건을 수용하는 등 유럽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국제사회에서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유럽연합보다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대내적인 정치적 명분을 고려하여 표면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유럽연합의 사례에서처럼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유엔의 민주화 주장

북한은 특정 인권기준에 의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행위가 유엔무대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9년 4월 6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행한 북한대표의 연설에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냉전이 종식된 후 인권분야에서의 정치화가 한계를 넘어 제도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서방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나라들의 심각한 인권유린현상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서방과 다른 사회정치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부당한 '결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기준'으로 인하여 '유엔 인권에 관한 위원회'(유엔인권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서방국가들은 '검사' 겸 '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단 몇 십분 동안에 발전도상국들의 인권문제를 '판결하고 있지만

36) 북한과 독일의 수교에 대해서는 김학성, 『북한·독일 수교의 배경과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2001)을 참조.

서방국가들 내부에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와 배타주의, 이주민들의 인권 유린, 경찰에 의한 폭행과 학대, 감금 등의 인권유린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가 자기의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7)</sup> 일부 열강들이 유엔을 자기의 소모품처럼 여기면서 '위기조정'과, '분쟁해결', '인권옹호'의 명분 하에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나라의 독단과 전횡,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정의와 평등, 공정성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유엔의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외교와 인권, 무력사용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유엔과 국제법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복종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을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무대에서 개별국가의 특권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권, 선택권, 결정권을 가진 '특수한 존재'로 간주하고 '국제경찰관', '민주주의감독관', '인권재판관' 등으로 자처하면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제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훈시와 샷대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9)</sup>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2001년 5월 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된 인권위원회 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서유럽과 북미지역에 할당된 이사국 3석을 놓고 진행된 선거에서 가장 적은 29표 밖에 얻지 못해 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이사국에서 탈락한 것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계'(MD) 구축을 강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할 데 대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거부하며 자기의 일방

37) "인권문제해결에는 객관성, 공정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인권회의 조선대표연설," 『조선중앙통신』, 1999.4.14.

38) 『민주조선』, 2000.8.17.

39) 『로동신문』, 2000.2.1.

적인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는 등 미국이 취해 온 오만무례한 행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인식은 유엔의 민주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끌어갈 공정한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기구체제와 활동에서 정의와 공정성, 평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200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연설을 통해 유엔이 지난 날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사안을 처리하여 온 점이 많으므로 유엔의 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2)</sup> 유엔의 개혁은 유엔의 활동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개혁은 비상임이사국 확대문제부터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이사국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활동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임이사국은 경제력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현장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국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국가라고 그 자격요건을 들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상임이사국은 개발도상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는 모든 지역들이 골고루 대표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안보리의 활동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sup>43)</sup>

유엔의 구체적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유엔이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총회의 권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큰 나라들의 강권행위는 묵인되고 있지만 작은 나라들의 자위적 조치는 제재와 압력의 대상으로

40) 『연합뉴스』, 2001.5.8.

41) 『로동신문』, 2000.10.24.

42) “자주정책은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대표단 연설,” 『조선중앙통신』, 2000년 9월 18일.

43) 『로동신문』, 2000.10.17; “유엔총회 제5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 『조선중앙통신』, 2001.11.7.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을 없애려면 유엔의 주도적 역할, 특히 총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다른 기관들에서 유엔 성원국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결의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며 특히 제재, 무력사용과 같은 안보리의 주요 결의들을 최종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4)</sup>

### Ⅲ. 인도주의 및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

#### 1. '인도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에서는 '인도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의 사전에 나타난 인도주의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시기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70년에 발간된 『정치용어사전』에서는 인도주의를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의 권리와 자유와 복리를 옹호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주의는 ‘부르조아 인도주의’와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로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르조아 인도주의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말살하고 멸시하는 위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을 착취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인도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반면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인도주의가 진정한 인도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반동적인 것과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5)</sup>

1981년에 발간된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인도주의를 “사람들의 자유와

44) 『로동신문』, 1999.10.24; “유엔총회 제56차 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 『조선중앙통신』, 2001.10.2.

45)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339~340, 718.

권리를 귀중히 여기고 옹호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르조아민주주의는 근로인민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은폐하려는 위선에 불과하고 참다운 인도주의는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인 인도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6)</sup>

그런데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인도주의에 대한 정의가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인도주의 개념이 태동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급적 속성에 따른 접근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에 대하여 주체철학에 기반한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동 사전에서는 인도주의를 “모든 사람의 평등과 인류의 행복실현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사상과 주장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인간의 복리증진과 전면적발전을 바라는 견해와 관점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태동과정에 대해서는 인도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소박한 형태로 처음 제기되었는데, 중세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론이 정립되어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은폐하는 위장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선적인 부르조아적인 인도주의에 대응하여 진정한 인도주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주체철학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이 먼저, 북한은 인도주의가 인간의 평등과 행복을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나 견해<sup>48)</sup>라는 일반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적 차원에서는 인도주의를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관점에 따라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사회가 근로자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여 주는 ‘인도주의적인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고 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4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871.

47)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696.

48) 『로동신문』, 2000.3.12.

권리를 초계급적으로 미화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sup>49)</sup>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인도주의를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인권과 인도주의가 논의되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침략과 약탈, 착취와 억압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오히려 인권과 인도주의의 최대의 원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보장은 인간재생과 인간존엄을 위한 인도적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본주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인도주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데서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인도주의의 허구성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발전도상국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약탈을 감행하기 위하여 ‘인도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인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50)</sup>

북한에서는 인도주의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착취적인 본능을 숨기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오늘날 ‘인도주의’는 미국에 의해 우롱 당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 미국식 ‘인도주의’는 그 외피를 벗겨 보면 실상은 지배주의, 패권주의라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인도주의를 매개로 한 지배주의 책동은 ‘세계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력균형이 파괴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적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주권 위에 ‘인권’과 ‘자유’를 올려놓으면서 ‘국제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는 외세의 간섭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서방나라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결핍’에서 발생한다고 떠들면서 ‘세계화’ 책동에 ‘인도주의’적인 외피를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분칠하여

49) 『로동신문』, 2000.4.12.

50) 『로동신문』, 2001.1.21.

51) 『로동신문』, 2000.3.12.

강행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인권’과 ‘자유화’ 문제는 ‘세계화’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sup>52)</sup>

## 2.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sup>53)</sup> 2000년 3월 29일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대표는 연설을 통하여 냉전의 장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던 무장개입과 갈등에 의해 야기된 난민의 흐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의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와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주권침해 사례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신성불가침인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일부 국가가 노골적인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고 무차별적으로 인프라가 파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4)</sup>

또한 200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대표는 현 시대 국제관계에서 가

52) 『로동신문』, 2000.1.12.

53)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둘러싸고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8, No.1(1997.1)에서 특징으로 다룬 바 있다. 이외에도 Stanley Hoffmann, *The Ethics and Polit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Thomas G. Weiss and Cindy Collins, *Humanitarian Challenges and Intervention: World Politics and the Dilemmas of Help*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김수암, “탈냉전기 인권과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중심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등의 업적을 참조할 것.

54)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tem 9: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장 심각한 도전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개념의 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하여 유엔은 주권적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있고 유엔 헌장도 국제관계의 '시금석'으로 주권존중의 원칙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55)</sup> 즉, 유엔 헌장에 구현된 주권의 존중을 근거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비판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개입은 갈등을 야기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자주권의 개념을 허물려는 시도로서 이로 인해 국가자주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쟁들은 외부세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sup>56)</sup>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고사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제국주의의 교활하고 추악한 정체는 큰 나라들과는 필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작고 힘이 약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무도하게 대하며 공개적인 무력침공과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가 미국이 나토를 내세워 '인도주의적 보호'라는 간판 하에 감행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7)</sup> 이러한 유고사태는 냉전의 종식 후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사태에서 보듯이 냉전의 종식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냉전의 유형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사태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대결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인된 주권국가이며 코소보 분쟁문제는 유고의 내정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를 내세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간판 하에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고사태는 본질상 미국을 필두로 하여 자행된 자주권에 대한 교살이며 국가테러라고 규정하고

55) "자주정책은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대표단 연설," 『조선중앙통신』, 2000.9.18.

56) "유엔총회 제56차 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 『조선중앙통신』, 2001.10.2.

57) 『로동신문』, 2000.6.18.

있다.<sup>58)</sup>

또한 유고에서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평화유지작전'의 허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가 코소보에서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질서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칸지역을 장악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유고슬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적대적인 전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 생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혈화우라늄탄'을 사용한 데서 보듯이 '인도주의' 구호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평화유지작전은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을 파괴시키고 신형무기의 시험과정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up>59)</sup>

#### IV. 결 론

북한이 인권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근본이유는 인권을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제보위라는 수동적, 방어적 태도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권문제 제기에는 대하여 문화적 상대주의, 주권의 원칙이라는 2가지 큰 틀 속에서 대응하여 오고 있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지만 각국의 인권 기준과 보장형태는 각국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인권 기준'과 '보장형태'라는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문제삼는 것에 대하여 체제에 위협적인 정치적 속성으로 인식하여 '주권의 원칙'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문화적 상대주의와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논리를 구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과 반박 일변도의

58) 『로동신문』, 1999.5.22.

59) 『로동신문』, 2001.1.26.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공식문건에서 주장하는 선전차원의 논리와 실제정책상의 태도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과 인권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 왔지만 중국도 미국의 요구를 점차 수용하여 조금씩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유엔인권소위에서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여 B규약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결국 B규약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수용하여 B규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상을 주어 국제사회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2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은 경제난의 악화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실제정책상으로 조금씩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법률적 차원의 개정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는 여전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속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의 개정이 실제현실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이 현 단계에서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개선의 실제현실 적용여부를 검증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지도부의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으로 점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접근에 따른 선전적 차원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점진적 수용과의 괴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우리정부가 직접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각국 정부, 국제기구, NGO 등 각 주체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는 등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각 주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EU의 요구를 수용한 인권대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대화는 처음에는 양자간 제도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전개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인권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우리식 인권이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북한인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나가는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를 붕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이해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제기를 체제안보와 동일시하는 북한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B규약의 주요한 침해사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유엔인권기구와 국제NGO를 통하여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국내NGO 등을 통해 유엔기구와 국제NGO들에 제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